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49
----------	------

2025년 3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홍국표 의원(찬성 35명)
-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홍국표 의원)

1. 제안이유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를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지원된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2025.2.11.~2.15.) 결과 : 의견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조례안의 개요

- 2023년 10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 문제가 제기¹⁾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음.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관계 법령>

구분	내용	관계 법령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²⁾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7.18.) 및 시행(‘24.7.19.)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³⁾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31.) 및 시행(‘24.7.19.)

- 본 제정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이라 함)이 지난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와 사무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임.

1) 감사원, 기관별 감사결과(보건복지부 정기감사), 2023.10.19. ‘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불합리’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생통보제, 위기임신 지원 7월 19일 시행, 준비 상황 철저히 점검’, 2024.5.24., 불임2. 출생통보제 개요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생통보제, 위기임신 지원 7월 19일 시행, 준비 상황 철저히 점검’, 2024.5.24., 불임3.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 배열>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제7조(지정취소 등)
제2조(정의)	제8조(비용의 환수)
제3조(시장의 책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5조(위원회)	제11조(시행규칙)
제6조(보호출산의 지원)	부 칙

- 17개 시·도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관련 자치법규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임.

<「위기임신보호출산법」 관련 광역단위 자치법규 입법현황>

(2025.2. 기준)

NO	구분	조례명	입법현황	시행여부
1	서울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계류 중 (25.2.3 제안)	△
2	대구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류 중 (25.1.31. 제안)	△
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23.8.7.)	○
4	충남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4.7.10.)	○
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24.7.12.)	○
6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4.3.8.)	○
7	대전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24.8.2.)	○
8	경남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	제정 및 시행 (24.9.26.)	○
9	전남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4.10.4.)	○

10	충북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24.11.1.)	○
11	경기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25.1.2.)	○
12	부산	-	-	×
13	인천	-	-	×
14	광주	-	-	×
15	울산	-	-	×
16	전북	-	-	×
17	경북	-	-	×

2 주요사항 검토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책무)는 상위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반영하여 동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과 조례안 대비표 >

구분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조례안
제 3 조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u>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라 한다)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

	<p>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	---	--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 당시 가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 제도 도입에 따른 임신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가 늘어나고, 자칫 합법적으로 장애아동 등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인권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았음⁴⁾.
- 이에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3조 제1항 후단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동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 법 제13조 제1항에서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후에도 ‘해당 아동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최대한 자녀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음.

4)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2023.10.8. ‘국회 통과한 ‘보호출산제’...정의당 반대토론, 인권단체 비판 성명 이유는?’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① 제9조(보호출산 신청)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이러한 상위법 제정 당시 배경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3조(책무) 후단에서도 ‘시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함에 있어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음.
- 집행부서(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상담기관이 지정 및 운영된 2024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50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후 출산을 하였고, 이 중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한 경우를 포함해 총 34명(68%)의 자녀를 출산한 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임.

<서울시 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상담 후 양육현황>

(24.7.19~12.31기준, 단위:명)

출산아동 합계	원가정 양육		원가정 분리	
	자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	입양진행	아동양육시설 등
	23	11	11	5
50 (100%)	34 (68%)		16 (32%)	

□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4조)

- 안 제4조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지역상담기관 지정과 수행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위기임신보호출산법」 과 조례안 대비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조례안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p>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p>	<p>② 지역상담기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p>

<p>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p> <p>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p> <p>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p> <p>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p> <p>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하는 업무</p>	<p>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p> <p>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p> <p>4.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p> <p>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p> <p>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업무</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법시행규칙 제5조</u>를 따른다</p>
	<p>④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7월 19일자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 대응 등 지역상담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통합지원단 업무를 통합·확대하여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2024년 8월 21일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5)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7. (생략)
8. 위기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9.~10. (생략)

<보호출산제 시행 대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6)>

구분	2023년(통합지원사업단)	2024년(통합지원센터)
접근·발굴	24시간 핫라인 구축(전문상담인력 3교대) ◦ 1551-1099(콜센터), 카톡채널	운영인력 4→10명으로 확충(~6월) ◦ [기존]위기임신 지원 + [추가]보호출산대응(7월~) ※ 지역상담기관 운영(7월~)
지원	긴급 보호	+ '24년 강화
	출산지원시설(7개, 중위소득 100% 이하) 민간 위기임산부의집(3개, 소득기준 없음)	
자원 연계	공공 사회복지제도 정보제공 및 연계 (미혼모 재정지원, 보편적 임신·양육지원 등)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 민간지원 적극 유치 → 다양한 자원으로 위기임산부이동 두텁게 지원

- 또한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안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항>

④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9조 제1호에서는 시장이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 제4항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6) 제323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p.26. 2024.4.23.

<지역상담기관 운영비 보조 관련 법령>

「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수행경비
3. 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경비

□ 보호출산의 지원 (안 제6조)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시장이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가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보호출산 지원 관련 법령과 조례안 대비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및 시행규칙	조례안 제6조(보호출산의 지원)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u>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지정취소 및 비용환수 (안 제7조, 8조)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시장이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고,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보호출산 신청인이 부정수급한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기임신보호출산법과 조례안 대비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0조 및 제22조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제22조(지정취소)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u>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제7조(지정취소 등) ① <u>시장은</u>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지정을 취소</u> 하거나 6

<p>하는 경우에는 <u>지정을 취소</u>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u>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u>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u>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u>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u>제20조(비용의 환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u></p>	<p><u>제8조(비용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u></p>
<p>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안 제7조(지정취소 등)와 안 제8조 제2항(지정취소된 지역상담기관 비용 환수)과 관련해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0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할 수 있고, 지정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안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지정취소 등과 비용 환수의 권한위임 법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 다만 안 제8조 제1항(보호출산 신청인 부정수급 환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보호출산 신청인의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시장이 보호출산 신청인의 부정수급을 직접 환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보호출산 신청인 부정수급 환수 관련 상위법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0조(비용의 환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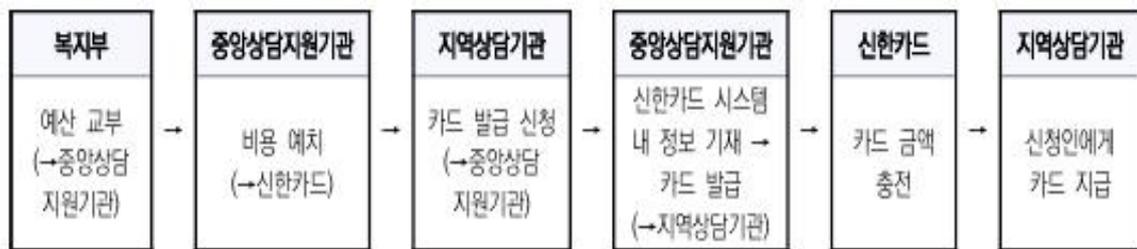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 이와 관련해 상위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신원 노출 우려로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비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의료비(1회당 100만원)와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일 20만원, 최대 7일 지급)으로 보여짐.

<무기명 선불카드 발급 등 비용 지원 절차7)>



- 반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0조 제3항에서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지방자치단체도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안내」에서도 국비 매칭 없이 지방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보호출산 신청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8조 제1항은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방재원으로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

7) 「2024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안내」, p.153.

- 「지방보조금법」 제34조8)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8조 제1항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집행기관 의견(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원안가결

- 소관부서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중요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정안에 ‘원안가결’ 의견을 제출함.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2024년 7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호출산의 지원,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의 사무를 규정하고,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집행부서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8)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기덕, 김영철,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 석,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이봉준,
이상훈, 이성배, 이승미,
이원형,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최재란, 황유정 의원(35
명)

1. 제안이유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를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지원된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아.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출산

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4.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④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보호출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비용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린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연번	관련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비용이 발생하나 관련부서 확인결과 기시행 사업 ¹⁾ 으로 별도 비용수반 없음
		△	일부 사업은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시 비용 발생이 예상됨 다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현재는 추계가 곤란
2	제5조(위원회)	△	위원회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통상적인 운영비용을 자체 책정하여 추계 하였음
3	제6조(보호출산의 지원)	×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지원 비용이 발생하나 관련부서 확인결과 기시행 사업 ²⁾ 으로 별도 비용수반 없음
4	제9조(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은 통상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³⁾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항제4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운용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하기에 시스템 관련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에 서울시 자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경우 비용발생⁴⁾의 여지가 있음
 - 안 제5조(위원회)에 따라 위원회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관련부서(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확인결과 비용추계를 위한 위원의 구성, 임기, 회의개최 주기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추계가 어려움
 - 다만, 통상적인 서울시 위원회 운영 비용을 준용하여 소요금액⁵⁾ 추정 시 아래와 같음

1) [기시행사업] 2025년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자체)> : 212,000천원

⇒ 관련부서(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확인결과 기시행(붙임 참조)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③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공공·민간기관 제공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입양·시설보호 지원	아동 입양, 아동보호시설 입소 연계
출산 지원	임신테스트, 분만비, 진료비, 병원 동행
산후조리 지원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간병 지원
긴급재정 지원	생활비, 의료비, 탁아비
아동 양육 지원	출산용품세트, 양육물품, 육아교육, 육아상담

자료 :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가족다문화담당관-11446, 2023. 7. 14.)

- 3) 협력체계 구축(업무협조)은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Ex.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므로 재정소요에 추가로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4) 서울시 관련부서(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확인결과 자체 시스템 구축추진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 객관적 추계가 곤란하며 시스템 구축 특성상 변수가 다양하여 통상적인 사례를 통한 자체추계 또한 어려움
- 5) 추정금액(9,584천원)은 위원회 운영내용을 임의로 가정하여 추계하였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제시함**

[참고]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운영 비용⁶⁾

○ 총비용 = 9,584천원(연평균 1,917⁷⁾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위원회 운영비용(안 재조)	1,928	1,900	1,928	1,900	1,928	9,584
	소계(a)	1,928	1,900	1,928	1,900	1,928	9,584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928	1,900	1,928	1,900	1,928	9,584

- (위원구성) 최소 구성⁸⁾인 5인 가정(공무원 1인 + 민간위원 4명)

: 지역상담기관의 장(민간위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민간위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민간위원) +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공무원) + 그 외(1명의 민간위원)

- (위원임기) 통상적인 서울시 위원회 임기를 준용하여 2년으로 가정

- (회의개최) 통상적인 서울시 위원회 개최 주기를 준용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를 가정

- (소요금액) 참석수당 1인 200,000원⁹⁾, 업무추진경비 1인 30,000원¹⁰⁾, 위촉장 제작비용 1인 5,500원¹¹⁾으로 전제

- (추계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① 참석수당 비용 = 1,600천원

= 수당단가 × 지급인원¹²⁾ × 연2회

= 200천원 × 4명 × 2회

② 업무추진경비 = 300천원

= 경비단가 × 지급인원 × 연2회

= 30천원 × 5명 × 2회

③ 위촉장 제작비용 = 28천원

= 제작비용 × 인원

= 5,500원 × 5명

6)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향후 정책수립 과정(위원 수, 위원구성, 위원회 회의개최 주기 등)에서 달라질 수 있음

7) 1,916.8천원이나 절상하여 1,917천원으로 작성함

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② 시·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최근 50천원으로 변경(2024. 8. 27. 개정)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

11) 서울시 유사사업 위촉장 소요금액 준용 / 2년마다 발생

12)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4명에게 지급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붙임] 2025년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자체)(안 제4조 및 제6조 관련)

□ 사업목적

-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 및 영아를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1.~12
- 지원대상 : 위기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 사업수행주체 : 공모 선정기관
- 사업 주요내용 :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운영(1551-1099), 24시간 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 지원기관 연계 등
 - 긴급 현장출동, 요청시 병원(출산)·공적서비스 신청 등 동행서비스 제공
 - 서울시 전용 전담창구 운영, 1:1 집중 사례관리 지원
 - 민간후원 연계 등

□ 향후 기대효과

-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도와 출산·양육을 지원

□ 사업비 : 212,000천원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5년 예산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업무추진 3,000,000원	= 3,0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 인건비 46,500,000원*4명	= 186,000
	○ 사업운영비 13,000,000원	= 13,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언론홍보 10,000,000원	= 10,000

자료 :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 예산설명서 발췌

※ 안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항 관련

〈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추진체계 〉



구 분	대 상	지원 내용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100% 이하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최장3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 출산축하 성장용품 지원
위기임산부의 집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권 밖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의 주거와 생활 지원 · 심리·정서 및 출산양육 지원
아동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입소 · 가정위탁 등

자료 : 2023. 9. 20.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시작...전화·카톡으로 24시간 상담>

구 분	2023년(통합지원사업단)	2024년(통합지원센터)
접근·발굴	24시간 핫라인 구축 (전문상담인력 3교대) ◦ 1551-1099(콜센터), 카톡채널	운영인력 4→10명으로 확충 ◦ (기존위기임신상담 + (추가)보호출산 상담대응)
지원	긴급 보호 출산지원시설 (7개, 중위소득 100% 이하) 민간 위기임산부의집 (3개, 소득기준 없음)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시설 입소(7월~) ※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출산지원시설 소득기준 폐지(1월~) 가정 같은 양육환경의 쉼터 신설(10호)
	자원 연계 공공 사회보장제도 정보제공 및 연계 (미혼모 재정지원, 보편적 임신·양육지원 등)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 민간지원 적극 유치 → 다양한 자원으로 위기임산부이동 두렵게 지원

자료 : 2024. 3. 27.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7월 '보호출산제' 시행 대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강화>